



서울특별시 기관간 업무협조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5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장 영보현 인

◎서울특별시훈령제 636 호

## 서울특별시기관간업무협조규정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은 기관간 업무협조규정 ( 대통령령 11,385 호 ) ( 이하 " 규정 " 이라 한다 ) 및 기관간 업무협조 규정시행 규칙 ( 총리령 286 호 ) ( 이하 " 규칙 " 이라 한다 )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협조통제관 ) 본청 산하기관에 두는 협조통제관은 서울시 보고 통제규정에 규정된 자체보고 통제관 또는 분임보고 통제관 이를 겸임한다.

제 3 조 ( 지정협조의 지정 ) 규정 제 7 조 2 항 및 동조 제 3 항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에서 시, 구, 사업소 ( 경찰국, 소방관서포함 ) 에 협조요청하는 지정 협조의 목록은 별표와 같다.

제 4 조 ( 처리기간의 준용등 ) ① 별표의 지정협조목록에 명시된 처리기간은 동일업무를 협조요청하는 각급행정기간에 준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별표의 처리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체협조 통제관의 통제를 받아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업무 협조를 요청받는 기관에 긴급한 사유를 명시하여 주어야 한다.

제 5 조 (통계번호) ①협조요청 문서의 통계인 난에는 지정협조의 경우에는 별표지정번호를 기입한다.

②비지정 협조문서의 통계인 난에는 협조를 요청하는 기관의 공문서 수신기호 다음에 이음표(-)를 하고, 협조문서 처리부에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제 6 조 (지도감독) 자체협조 통계 관은 산하행정기관간의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 조정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정 협 조 의 목 록

지정번호	업무협조명	처리 기간	협조요청 기관	협조기관
혼합나 1-1	시험감시관 차출협조	15 일	총 무 처	시 (인사과) 구 (총무과)
혼합나 1-2	광업권 설정에 따른 공익협외	20	동력자원부	시 (연료과)
혼합나 1-3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요청 /	30	문 교 부	시 (시설계획과) 구 (도시정비과)
혼합나 1-4	학교시설 사업 시행계획 신청 /	30	•	시 (시설계획과) 구 (도시정비과)
혼합나 1-5	학교시설물 건축 협외 신청 /	20	•	시 (건축지도과) 구 (건축과)
혼합나 1-6	의무 취학 예정자수 파악 /	40	•	시 (행정과) 구 (총무과)
혼합나 1-7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금지행위의 정화요청 /	30	•	시 (보건위생과) 구 (위생과)
혼합나 1-8	토지형질변경 협의신청	30	•	시 (도시계획과) 구 (도시정비과)
혼합나 1-9	거소조회	7	국 세 청	시 (행정과) 구 (총무과)
혼합나 1-10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 송달 의뢰	7	병 무 청	구, 동 (민방위과)
혼합나 1-11	도로굴착 승인 요청	30	구	시 (도로과)

지정번호	업무형조명	처리 기간	협조요청 기관	협조기관
훈협나1-12	국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요청	30	구	시(관재과)
훈협나1-13	국·공유재산 재산가액 감정의뢰	30	·	·
훈협나1-14	도로부지 용도폐지 실시 의뢰	30	·	·
훈협나1-15	대형 양수기 설치의뢰	7	·	수도관리사업소
훈협나1-16	10층이상 고층건물에 소재한 위생업소 허가 시 동의	7	·	소방본부 소방서
훈협나1-17	병원 영선사업 설계감독 준공검사 의뢰	7	시립아동병원	강남구청(건축과)
훈협나1-18	도로 점용허가에 따른 교통장애 및 공안문제 협의	7	구	경찰서
훈협나1-19	보도 횡단차량 출입시설 허가	15	·	·
훈협나1-20	행방불명자 소재 조사 의뢰	30	병무청	·
훈협나1-21	운전면허 취득자 명단 통보 요청	15	·	·
훈협나1-22	병역기피자 고발 처리 확인 요청	14	·	·

지정번호	업무협조명	처리 기간	협조요청 기관	협조기관
훈협나1-23	국공유지 교환재산 목록 변경 협의	15	국방부	시(관재과)
훈협나1-24	무상대부 재산교환 협의	17	•	•
훈협나1-25	국유재산 무상관리 환봉 의 협의	20	•	•
훈협나1-26	지목변경 및 등급설정	20	•	시(세정과) (도시계획과) 구(세무1과) (도시정비과)
훈협나1-27	조립 및 시비용 비료화 보협의	7	•	시(공원과) (농지과)
훈협나1-28	군부대내의 문화재 보수 협의	20	•	시(문화담당관)
훈협나1-29	외국인 토지권리 허가위 득 신청의견 조회	7	•	시(지적과)



지방법정직공무원의 임용동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준칙

\*\*\*\*\*

지방법정직공무원의 임용동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근무상한연령 초과자에 대한 경과 조치)

- (1) 이 조례 시행당시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이 초과된자는 1985년 12월 31일에 근무상한 연령이 달한 것으로 본다.
- (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도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상한 연령을 연장 받고자 하는자는 1985년 11월 30일까지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 연령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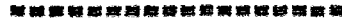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구 조문 대비표



연 형	개 정 안
<p>부 칙</p> <p>제3조(근무상한연령 초과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를 시행당시 근무상한연령이 초과된 자에 대하여는 1985년 12월 31일까지는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부 칙</p> <p>제3조 (근무상한연령 초과자에 대한 경과 조치) ① 이 조를 시행당시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이 초과된자는 1985년 12월 31일에 근무상한연령이 달한 것으로 본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도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고자 하는자는 1985년 11월 30일까지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p>

서 율 특 변 시

번무 02101 - 225

1985. 11. 01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법령개정건의 (안) 제출 건의

1. 번무 02101 - 477 (05.10.19)와 관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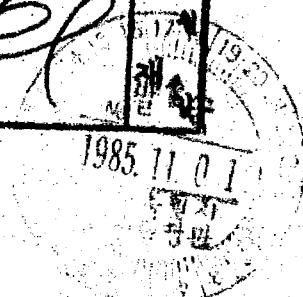
2. 상기 태도로 시정한 법령개정건의안 제출의 건을 05.10.19까지 제출한 건의안이 다음 2건만 접수되었는바 유비 사유시 행정여건으로 되어 또한 관련 부처에 개정건의 하였으나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았거나, 앞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각종법령의 규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제출기한을 당초 05.10.31까지에서 05.11.5까지 연기하오니 각 신과장은 재검토하여 바집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된 건의안

- (1) 학교시설 사업촉진법 시행령 부칙 2항 (인정행위) ----- 시설기획과
- (2) 하수도법 시행령 제21조 (연체금의 한도액) ----- 하수과

나. 개정건의 대상법령, 제출시식, 사후조치지침등은 기 시달한 공문을 (번무 02101 - 477, 05.10.19)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제	시·제상	관리계장	사무계장	사무국장	학	장	결	년
		쿠가	종					



서울시립대학	부	무	담	담	관
85.11.4	부				
수신처	사				
40pp	호				
시부	사				
	항				
		1985년		205	
		처리할것			

( 관인생략 )

문 고 부

총부 22410-3421

720-3421

1985. 11. 4.

수신 수신서 참조

제목 국유재산법시행규칙중 개정령 송부 및 관련업무지시

1. 제부부 국재 22410-2940 (85. 10. 31) 외 이첩임
2. 국유재산법시행규칙중 개정령이 범칙과 같이 공포되었기에 그 사본을 송부하며,
3. 동 개정령시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음

가. 동 개정령 제 11조 제 1항 제오의 "소관출본명어부를 조사한 공부일람과 확인서"는 범칙2)의 양식에 의하며,

나. 국유재산법시행령 제 36조 제 1호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이 따라 작성되는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정안바에의함것

첨부 : 1. 국유재산법시행규칙중 개정령사본 1부

2. 공부일람과 확인서 양식 1부		각 장		결
제	장	사 부 국 장	부	년
		전 결		월
문	고	부	장	관



정부공문서 규정 제 20조 제 1항의 규정이 의이  
총 부 과 장 김 아 문 전 경

수신처 : 마1-13, 학1-45, 전1-20.

서울시립대학		결재 지 시 사 항	198 년 7 지외할것
접수 일시	87.11.18		
접수 번호	4147		
부서	사무		
담당자 이름			

(별첨 1)

재무부명 1658호

## 국유재산법시행규칙증개정령안

국유재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7조 제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소  
재국가의 관계법령에 따라 동기·등록 또는 이에 갈음하는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1조제 1항제 2호 및 제 3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항에 제 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관청 불분명 여부를 조사한 공부열람결과 확인서

제 11조제 2항중 “제 1항제 1호 내지 제 3호”를 “제 1항제 1호”로 하고, 동항에 제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동기부동본 및 지적법제 2조제 1호의 지적공부

제 11조제 3항중 “제 1항제 1호 내지 제 3호”를 “제 1항제 1호”로 하고, 동항에 제 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동기부동본 및 지적법제 2조제 1호의 지적공부

제 12조제 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 2항중 제 4호·제 6호 및 제 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 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동일평가시점의 교환재산 평정가격과 그 평정조서
  6. 교환재산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또는 입야대장
  7. 교환재산의 도면
  8.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의 도시계획확인원
- 제 12조제 3항제 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 4호를 삭제하며, 동항 제 6호 내지 제 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양여목적 또는 양여사유

6. 양여조건

7. 도 면

8. 신청서의 부분

9. 양수목적인 사업의 계획서와 그 수지에산서

제 12조제 4항중 “제 3항 각호”를 “제 3항제 1호 내지 제 3호 및 동항 제 5호 내지 제 8호”로 한다.

제 19조제 1항중 “사용허가”를 “사용·수익허가”로,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건물가액과 부지가액”으로, “재산의 평가액”을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제 19조제 2항중 “사용허가”를 “사용·수익허가”로, “건물평가액”을 “건물가액”으로, “재산의 평가액”을 “재산의 가액”으로 하고, 동항 제 1호 및 제 2호중 “부지평가액”을 각각 “부지가액”으로 한다.

제 19 조제 3 항 본문중 “사용허가” 를 “사용·수익허가” 로,  
“건물평가액” 을 “건물가액” 으로, “재산의 평가액” 을 “재  
산의 가액” 으로 하고, 동항 제 1 호 내지 제 5 호중 “부지평  
가액” 을 각각 “부지가액” 으로 한다.

제 20 조제 3 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경작물의 소득금액을 정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그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결  
정한다.

제 24 조제 4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정부위탁업무·공무원후생업무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총괄청이 지  
정하는 법인

제 31 조제 1 항중 “한국은행” 을 “국고” 로 하고, 동조제 3 항  
중 “소송종료” 를 “확정판결” 로 하며, 동항에 제 4 호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판결문 사본

제 3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3 조 (특정지역) 영 제 37 조제 1 항단서에 규정하는 총괄청  
이 지정하는 지역은 인구 20 만이상인 시로 한다.

제 34 조중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6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 1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한다.

제 34 조의 2에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 37 조제 7 항의 “기타 정당한 사유”라 함은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매각을 예약한 경우를 말한다.

제 55 조의 2중 “은닉 또는 무주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해당없음을 통보한다”를 “은닉 또는 무주재산이 아닌 경우 또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이를 통지한다”로 한다

제 57 조의 제목“(은닉재산등 목록부)”를“(은닉재산등 처리대장)”으로 하고, 동조제 1 항을 삭제하며, 동조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도지사는 별지 제 14 호서식(6)의 은닉무주재산처리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반기경과후 30 일 이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8 조제 1 항본문중 “500 만원”을 “100 만원”으로, “100분의 10”을 “1000분의 10”으로 하고, 동조제 2 항본문중 “300만원”을 “50 만원”으로 “100분의 5”를 “1000분의 5”로 하며, 동



조제 3 항목 “신고당시”를 “제 1 항 및 제 2 항에 해당하는 재산일 지라도 신고당시”로, “100 만원”을 “10 만원”으로, “100분의 3”을 “1000분의 3”으로 하고, 동조에 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필지별”은 신고당시의 필지를 기준으로 하며 신고당시의 필지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 귀속 당시의 필지를 기준으로 한다.

제 63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63 조의 2 (공유토지의 분필) 관리청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제 32조제 2 항에 규정한 법인에 의뢰한다.

지 제 14 호서식·별지 제 14 호서식(4) 및 별지 제 14 호서식(5)를 삭제하고, 별지 제 14 호서식(6)의 제목 “( )분기 은닉무주재산 처리현황보고”를 “( )반기 은닉무주재산처리현황보고”로 하며, 서식의 기별란중 “당분기중”을 “당반기중”으로 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공공단체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 24 조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단체로 지정받은 법인은 제 24 조제 4 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공공단체로 지정받은 것으로 한다.
- ③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국가귀속이 확정된 은닉재산등에 대한 보상금의 최고액과 그 보상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별첨 2 )

공부열람결과확인서

번호	재산소재지	지목	면적	동기부동산소유자

상기한 재산은 동기부동산 및 지적법 제2조제1항의 지적공부를 열람한 결과 판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임을 확인함.

19      년      월      일

관리청지정신청기관      인

( 190 mm × 268 mm )